충청남도 공고 제2021-1591호

도「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」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연장공고

「사회적 거리두기」 체계개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.

2021. 10. 17.

충청남도지사

1 처분 근거

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

- (벌칙·과태료·행정처분) 동법 제80조, 제83조, 동법 시행규칙 제42조

[감염병예방법]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,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3. 버스·열차·선박·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[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(행정처분의 기준)]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(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등 행정처분 실시)과 같다.

2 처분 사항

□ 기 간 : 2021. 10. 18.(월) 0시 ~ 2021. 10. 31.(일) 24시까지

□ 대 상 :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

*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

□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조치

□ 다중이용시설 관리 (수칙 요약표)

○ 도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별첨한 '3단계 기본방역수칙'과 아래의 각 시설별 '의무화 조치' 적용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모임·행사</td></tr>
<tr><td>사적 모임</td><td>▸ 11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

〈적 용 제 외〉
❶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❷ 아동(만 12세 이하)·노인·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❸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❹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
* 단, 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49명(16명+접종완료자 33명)까지 가능
❺ 결혼을 위한 상견례(10인까지)
❻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시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*단,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(예: 풋살 최대 15명)

※ 적용기간(10.18.~10.31.) 중 사적모임(가족모임 포함)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(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)까지 가능 (11명 이상 불가)

※ 2021. 7. 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집합·모임·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
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을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</td></tr>
<tr><td>기타 행사·모임</td><td>▸ (행사·집회) 50인 이상 행사·집회 금지
※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(법령 등 근거)</td></tr>
</table>

구분	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
1그룹 시설 (공통 : 마스크착용, 열체크, 출입명부 작성, 환기3회, 소독1회)	
유흥시설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)	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※ 클럽, 나이트 10㎡당 1명** ▸ **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(유흥종사자 포함) ▸ (감성주점, 헌팅포차 추가조치)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
콜라텍,무도장	▸ **시설 면적 10㎡당 1명 인원 제한** ▸ **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▸ 음식 섭취, 소리지르기 등 비말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
홀덤펍, 홀덤게임장	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** ▸ **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
2그룹 시설 (공통 : 마스크착용, 열체크, 출입명부 작성, 환기3회, 소독1회)	
식 당 · 카 페 (일반음식, 휴게, 제과)	▸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(50㎡이상 시설) ▸ **24시~다음날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가능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편의점 (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)	▸ **24시~다음날 05시까지 시설 내외 취식금지(24시~ 다음날 05시까지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·이용 금지조치 및 안내)**
노래(코인)연습장	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** ▸ **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개별 방마다 이용후 30분 이상 환기(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)
목욕장업 (목욕탕, 찜질방, 사우나 등)	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** ▸ **수면실 운영금지** ▸ **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및 발한실•탕에서 대화 자제 ▸ **탕 내 샤워시설 한칸 띄우기**
실내체육시설	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(체육도장, GX류는 6㎡당 1명)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샤워실 운영·이용 가능 ▸ **수영장은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**
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	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** ▸ **운영시간 제한 해제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음식 제공·섭취, 공연, 노래부르기 금지

구분	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
3그룹 시설 (공통 : 마스크착용, 열체크, 출입명부 작성, 환기3회, 소독1회)	
학 원	▸ **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 당 1명 (좌석 없는 경우)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※ (관악기, 노래, 연기) 칸막이 안에서 실시 **※ (기숙형학원)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 가능**
영화관·공연장	▸ **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** ▸ **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,000명 이내로 제한(정규공연시설)** ※ 정규공연시설* 외 공연시설: 6㎡당 1명+최대 관객 수 2,000명 이내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(온라인예매자는 제외) ▸ 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독서실· 스터디카페	▸ 좌석 한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지정구역 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결혼식장	▸ **개별 결혼식당 최대 49명 + 웨딩홀별 4㎡당 1명 가능** - 단, 참석자는 접종완료자(최대201명)포함 최대 250명 가능 ※ 식사제공 없이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+웨딩홀별 4㎡당 1명에 예방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포함 예식도 가능(총 199명)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장례식장	▸ **빈소별 50인 미만 +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놀이공원	▸ **수용인원의 50% 인원 제한** ▸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놀이시설 탑승구 손소독제 비치, 이용 전후 손소독 하기
워터파크	▸ **수용인원의 30% 인원 제한** ▸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금지, 샤워실에서 한칸 띄어 사용
오락실·멀티방	▸ **시설면적 8㎡ 당 1명 인원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※ (멀티방) 개별 방마다 이용후 30분 이상 환기(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)
상점,마트,백화점 (300㎡ 이상)	▸ **판촉용 시음, 시식,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, 휴게공간 이용, 집객행사 금지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(3,000㎡이상 대규모 점포) * 300㎡이상 준대규모점포, 종합소매업은 권고
카지노 (외국인 카지노 제외)	▸ **수용인원의 30% 인원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
PC방	▸ **좌석 한칸띄기(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)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음식 섭취 금지(단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) *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

구분	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
기타시설	
스포츠경기 (관람)장	▸ **(실내)수용인원의 20% , (실외)수용인원의 30%** ▸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▸ 사전예약제 운영권고,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, 함성•응원 금지
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	▸ **수용인원의 20% 인원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▸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함성•응원 금지
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	▸ **시설면적 6㎡당 1명의 50% 인원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▸ 전시공간에서는 음식섭취 금지
실외체육시설	▸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▸ 샤워실 운영·이용 가능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숙박시설	▸ 객실 내 정원기준(최대정원) 초과 금지 ▸ 전 객실 운영가능(3단계) ▸ **파티 등 행사주최 금지**
파티룸 (공간 대여업)	▸ **시설면적 8㎡ 당 1명 인원 제한** ▸ **파티 목적의 운영,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도서관	▸ **수용인원의 50% 인원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교육행사 운영 시 거리두기 준수, 단체견학 자제
키즈카페	▸ **시설면적 6㎡ 당 1명 인원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대기 줄을 서는 경우 최소 1m 간격 바닥에 표시
돌잔치	▸ **16인까지 가능** * 단, 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49명(16명+접종완료자 33명)까지 가능 ▸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이상)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구분	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
전시회·박람회	▸ **시설면적 6㎡ 당 1명 인원 제한** ▸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▸ 사전 예약제 운영(의무)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마사지업소 안마소	▸ **시설면적 8㎡ 당 1명 인원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이·미용업	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밀집도 완화, 예약제 운영(권고), 방역수칙 준수점검, 사업장 내 휴게실 관리 방역수칙 추가(9.13.월 0시~ 별도 조치 시)
국제회의· 학술행사	▸ **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** ▸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*가 아닌 학술행사는 아래 수칙 추가 적용 *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 가능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요양병원 요양시설	▸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▸ **종사자 선제검사 실시**
사회복지시설	▸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종교시설	▸ **수용인원의 20% 또는 30%(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)까지 참석 가능** * 접종완료자 범위: 정규종교활동 진행 내지 주관자 및 참석자 ▸ **음식섭취 금지** ▸ **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(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)** 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직장근무	▸ 50명 이상 사업장(제조업 제외)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20% 권고
대중교통	▸ 마스크 착용 ▸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,
마스크 착용 의무	▸ 실내 전체 +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▸ 위반시 과태료 부과(10만원) ※ 1차 예방접종자, 예방접종완료자 포함

3 기타 사항

1. 처분사유 : 코로나19 유행 양상, 감염병 통제범위,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·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

2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3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 제7호(300만원 이하의 벌금)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, 손실보상금·재난지원금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참고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▣ 적용기간(10.18.~10.31.) 중에는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 가능(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 가능)하며 결혼식장 등 개별 시설에 대한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는 아래 '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'에 의함

○ (다중이용시설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*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
○ (종교시설) 2021.7.1.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**와 예방접종 완료자*는 정규 종교활동(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)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, 성가대,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

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1 [대상] 1~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

< 대상시설(35종) >

구분	시설명
1그룹(3종)	▲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 ▲콜라텍·무도장 ▲홀덤펍·홀덤게임장
2그룹(5종)	▲식당·카페 ▲노래(코인)연습장 ▲목욕장업 ▲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 ▲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3그룹(11종)	▲학원 등 ▲영화관·공연장, ▲독서실·스터디카페, ▲결혼식장, ▲장례식장 ▲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, ▲유원시설, ▲오락실·멀티방 ▲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, ▲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 ▲PC방
기타시설(14종)	▲스포츠경기(관람)장 ▲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 ▲미술관·박물관·과학관 ▲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 ▲숙박시설 ▲파티룸 ▲도서관 ▲키즈카페 ▲돌잔치 ▲전시회·박람회 ▲마사지업소·안마소 ▲국제회의·학술행사 ▲이·미용업 ▲종교시설
고위험 사업장	▲콜센터 ▲물류센터

2 방역 수칙

□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3종(고위험 사업장 외)에 대한 방역수칙은 **'별첨 기본방역수칙' 중 대상시설의 3단계 수칙과 아래 '추가적용 수칙' 적용**

※ 기본방역수칙과 상충되는 내용은 아래 '추가적용 수칙'을 적용

○ **'콜센터', '물류센터'**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**의무사항**임

<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(콜센터, 물류센터)>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★ 추가 적용 수칙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▲ 공용공간 중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(의무)</td></tr>
<tr><td>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-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
※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, 1인씩 이용안내</td><td>○ (이용자)
-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준수
※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, 1인씩 이용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▲ 식당·카페</td></tr>
<tr><td>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- 24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(편의점* 포함)
-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·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</td><td>○ (이용자)
- 24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로만 이용 (편의점* 포함)
-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·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*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, 자유업 포함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▲ 노래(코인)연습장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※ 노래(코인)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 중인 시설(예: 뮤비방 등)은 노래(코인)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(1~4단계 공통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▲ 실내·외 체육시설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○ 샤워실 운영·이용 가능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○ 운영시간 제한 해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▲ 결혼식장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○ 개별 결혼식당 49명+웨딩홀별 4㎡당 1명 가능
- 단, 참석자는 접종완료자(최대 201명) 포함 최대 250명 가능
※ 식사제공 없이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+웨딩홀별 4㎡당 1명에 예방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포함 예식도 가능(총 199명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▲ 돌잔치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○ 종전과 같음(16명)
단, 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49명(+33명)까지 가능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▲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(3~4단계, 적용 권고)
※ 3,000㎡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(예: 농협하나로마트) 아래 출입자 명부 작성·관리 의무</td></tr>
<tr><td>○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
○ 출입명부 4주 보관 후 폐기
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
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</td><td>○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
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※ 각각 300㎡ 이상인 경우만 적용 권고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▲ 학술행사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○ (정의) 학술행사란, 대학·연구기관·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, 학문·기술 등 학술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(심포지엄, 컨퍼런스, 세미나, 워크숍 등 명칭 무관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▲ 숙박시설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○ 전(全) 객실 운영 가능
※ 거리두기 3단계 객실 운영 제한(전 객실 3/4 운영) 해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▲ 종교시설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○ 전체 수용인원의 각각 20% 또는 30%(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)까지 참석 가능
* 접종완료자 범위: 정규종교활동 진행 내지 주관자 및 참석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★ 준수 의무사항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▲ 콜센터</td></tr>
<tr><td>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
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
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
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
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
-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
-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
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</td><td>○ (이용자)
- 방역수칙 준수
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▲ 물류센터</td></tr>
<tr><td>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
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</td><td>○ (이용자)
- 방역수칙 준수
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</td></tr>
</table>

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 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-일 1회 이상 소독(소독대장 작성) * 하역, 운반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, 작업화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-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 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	

○ **'이미용업'**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을 적용하되 비교적 장시간 머물며 시설 내 인원(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)간 대면·접촉이 많아 선제적 방역조치 추가 **<9.3.(월) 0시~ 별도 조치 시 까지>**

<추가적용 수칙>

<이·미용업(1~4단계)>

방역항목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	비고
밀집도 완화	○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 * 좌-우측 구분 통행 등 ○ 이용자 외 동행 제한(권고)	○ 이용자 외 동행 제한(권고)	○ 이용자 외 동행제한(권고)의 경우 영유아 등 단독으로 이·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한(권고) 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
예약제 운영(권고)	○ 유선, 모바일 등 '예약제'로 분산 운영(권고)	○ 이-미용실 이용 전 유선, 모바일 등 '예약' 후 이용(권고)	-
방역수칙 준수 점검	○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 * '**일일 점검표**'에 따라 점검	-	○ 관리자·운영자가 일일 점검표 작성
사업장 내 휴게실 관리	○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물 섭취 금지 ○ 식사 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 ○ 식사 시 대화 자제, 음식 나눠 먹기 금지, 식사 후 환기	-	○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이용 휴게실

※ 위 수칙은 거리두기 1~4단계 공통사항이며 종전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적용

3 법적 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,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※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공포(7.7.)됨에 따라 시설별 (기본) 방역수칙 중 '운영시간 제한' 위반의 경우,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(집합제한 조치 위반)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**제83조(과태료)**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4 추진내용 및 절차 : 다중이용시설 등

① (중대본) **다중이용시설 등 1~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 등 35종** 방역지침 준수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**방역지침 준수 조치**)

⇩

② (지자체) 관내 **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** 실시, **준수 여부 현장점검**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⇩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**과태료 부과**(감염병예방법 제83조), **집합제한 조치(운영시간 제한) 위반 시 고발 조치**(감염병예방법 제80조)

⇩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**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**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**방역지침(운영시간 제한 등) 위반**으로 확진자 발생 시 **손해배상 청구**

*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운영중단, 시설폐쇄명령 가능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,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시설별 **기본방역수칙(추가적용 수칙 포함)과 준수 의무사항(콜센터, 물류센터)**을 **모두 준수**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**추가 행정조치** 및 **안내** → 이행여부 **현장점검** → 위반시 과태료(또는 고발조치) 부과 → **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**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**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** 및 **추가 행정조치** 실시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.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
-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3개월 이내**의 **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*

-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참고2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◈ 적용기간(10.18~10.31.) 중 사적 모임(가족 모임 포함)은 **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**(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)까지 가능(11명 이상 불가)

○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집합·모임·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

• 단, 집회·시위의 경우,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

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1 적용 대상 등

❶ 11명(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)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○ (조치내용)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11명 이상의 사람들이 **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**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**일시적인 집합·모임활동 금지**

○ (금지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**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**

○ (인원산정) '11명의 범위'에 **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, 등 제외**

※ 적용 예외

❶ **일상적인 가정생활**을 위하여 **가족구성원* 등**이 모이는 경우

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이 모이는 경우
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
■ 아동(**만 12세 이하**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
■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❷ **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10인까지 허용**

❸ **돌잔치는 최대 49인*까지 허용**

* 1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가능

❹ **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**

* 단,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 풋살 최대 15명) 초과 금지

❷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명 **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·모임·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·장소**

○ **동일 목적**을 가진 사람들이 **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**에 따라 **동일한 장소**에 모여서 진행하는 **일시적인** 집합·모임·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

- **단, 대규모 스포츠 대회**에서 **대회참가자 및 운영인력**이 **접종완료자 또는 PCR음성확인된 자***인 경우, 최소 인력 참가로 **대회 개최 가능**

* 경기 전 48시간 이내의 확인서만 유효

< 5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 >

▲ **(모임·행사)** 결혼식, 장례식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각종 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
※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은 각각 별첨 '기본방역수칙'의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장 수칙과 추가수칙을 적용

❸ **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**

- **법령 등에 근거**한 활동으로, **일정 인원 이상**이 **대면**으로 모여야 하며, 시한이 정해져 있어 **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** 등 행정·공공기관의 **공적 업무수행** 및 **기업의 경영활동**에 **필수적**인 **모임·행사**는 <u>인원 제한 없이 **허용**</u>

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

❹ **시험의 경우, 수험생 간 1.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(1~4단계)**

2 법적 근거

○ 「**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**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의2호, 제2의4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3 추진내용 및 절차 : 사적 모임

① **(중대본)**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**방역지침 준수 조치**)

⇩

② **(지자체)**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(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)

⇩

③ **(지자체)**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게 **과태료 부과** (감염병예방법 제83조)또는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* 행정조치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
*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(예 : 자전거 동호회 모임)에 한함

⇩

④ **(지자체) 집합금지 행정조치** 위반 시 **고발조치**, 확진자 발생시 **손해배상 청구**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즉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,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운영중단,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(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·운영자)의 준수사항

< 사적 모임 >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참석자 수칙
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11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11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11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, 사적 모임인지 확인 ▸ 위 ①,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11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	▸ 11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

※ 적용기간(10.18.~10.31.) 중 접종미완료자 4명 포함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

사적모임 최대 10명(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) 가능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+완료자 0명 ⇒ 4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+완료자 6명 ⇒ 10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+완료자 7명 ⇒ 10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+완료자 8명 ⇒ 10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+완료자 9명 ⇒ 10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+완료자 5명 ⇒ 10명(X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+완료자 6명 ⇒ 11명(X)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**추가 행정조치** 및 **안내** → 이행 여부 **현장점검** → 위반 시 **과태료 부과** 또는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→ **벌칙 부과** 등 조치

① 관내 **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** 실시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,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.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② 해당 모임·행사에 대해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**지자체장**이 **과태료 부과**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실시

-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**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4 추진내용 및 절차 :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

① **(중대본)** 집합·모임·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)

⇩

② **(지자체)** 관내 **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**
행정조치 **준수 여부 현장점검**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⇩

③ **(지자체)**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·종사자·참석자에 **과태료 부과**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

⇩

④ **(지자체)**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**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*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**방역지침 위반**으로 확진자 발생 시 **손해배상 청구**

*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운영중단, 시설 폐쇄명령 가능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**적용대상 집합·모임·행사의 준수사항**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**50명 미만의 행사 및 집회·시위**를 개최하는 경우 **해당 장소·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**

< 50명 미만 행사 및 집회·시위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▸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▸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▸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 ▸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※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) ▸ 마스크 착용 ▸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
※ 집회·시위의 경우, 예방접종완료자도 인원 수 산정 시 포함(1~4단계 공통, 인센티브 적용×)	

○ **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**

☞ **추가 행정조치** 및 **안내** → 이행여부 **현장점검**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**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** 등 조치 → **벌칙 부과** 등 조치

① 관내 **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** 및 **추가 행정조치** 실시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.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② 해당 모임·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
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**지자체장**이 **과태료 부과** 또는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실시

-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**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참고3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□ **(대상)**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**운송수단**(국제항공편 제외)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·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-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(국제항공편 제외)

※ 시군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

○ **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**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**방역지침**을 모두 준수

이용자 수칙
▸ 마스크 착용 ▸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, 국제항공편 제외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참고4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

□ 적용대상

○ 충청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□ 방역수칙

○ 실내*전체 +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(1차 예방접종자, 예방접종완료자 포함)

* 실내 :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
○ 허가된 마스크(❶항)로 착용법(❷항)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함

❶ (마스크 종류)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립뷰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
❷ (착용법)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,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

○ **단속방법**

-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
- 위반행위 적발 시,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, '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*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

* 위반행위 적발 → 신분증 제시, 단속근거 설명 →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→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) → 과태료 부과통지 → 이의제기 안내(60일 이내)

**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

○ **(과태료)**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

○ 과태료 부가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

예외자	•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• **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**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•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**의학적 소견**을 가진 사람 • 가정 내, 개별공간(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)
예외 상황	• 음식·음료를 **먹거나 마실 때** • 수영장·목욕탕 등 **물속·탕 안에 있을 때** • 세수, 양치 등 **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** •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**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** • 얼굴을 보여야 하는 **공연**(무대에 머물때로 한정), **방송 출연**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**및 사진 촬영**(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), **수어통역을 할 때** • **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** • **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** • 본인 확인을 위한 **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** •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 •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